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 1.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1. 2. 3

다. 상 정 일 자 : 2001. 2. 3

(제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장 구 복 규

나. 개정사유

-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기금의 설치·운용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 지방재정법 제110조 ③항에서는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서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내용을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개정키 위함.

다. 주요내용

- “군수는 매년 사용 할 수 있는 운용금의 범위 내에서 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를
- “군수는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안 제7조)로 개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정열)

- 지방재정법(제110조)등 기금관련 법령의 규정내용과 합치될 수 있도록 동 조례의 내용을 개정키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 화순군 체육진흥기금의 운영계획과 결산보고서의 의회제출 기일을 명시하여 의무화 함으로써 동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조치라 판단됨.
- 아울러,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기금의 운영 및 결산) 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고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 까지 군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1항중 “기금 운용과 출납원을 둔다”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로 한다.

제10조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별표] 화순군 체육진흥 적립기금 조성계획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계	'92	'93	'94
계	500,000	130,000	180,000	190,000
출연금	400,000	100,000	150,000	150,000
기타수입금	100,000	30,000	30,000	40,000

<개정안>

[별표] 화순군체육진흥적립기금조성계획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계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계	1,000,000	50,000	100,000	132,000	100,000	198,000	5,000	194,000	18,000	13,000	118,000	72,000
출연금	700,000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0	100,000	0	0	100,000	50,000
기타 수입금	300,000	0	0	32,000	0	98,000	5,000	94,000	18,000	13,000	18,000	22,000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기금 운영계획) 군수는 매년 사 용 할 수 있는 운용금의 범위내에서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매회계 연 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체육진흥기 금 조성 및 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p>	<p>제7조(기금의 운영 및 결산)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 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 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군 수는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u>기금 운용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u> ② (생략)</p>	<p>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군 ----- -----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 (기능) (생략) 1. <u>체육진흥을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u> 2~3. (생략)</p>	<p>제10조(기능) (현행과 같음) 1. (삭제) 2. ~ 3. (현행과 같음)</p>